의안번호	제 호
의결 연월일	20 . . . (제 회)

의결사항

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군의료시설의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하여 취약지역 등 민간 의료시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 근무하는 군무원의 건강권 보호 및 군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국군의료시설의 의사나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범위에 군무원인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를 추가함(안 제23조제1항 개정)

4. 주요토의과제

없　　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　　타 : 1) 신・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약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호 중 “군인인”을 “군인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군무원인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) 법 제23조제4항제1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	제23조(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) ----------.
1. 「국군조직법」 제15조에 따른 국군의료시설의 의사나 치과의사가 그 업무 수행으로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군인인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	1. ---------- 군인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군무원인 ----------
2. ~ 7. (생 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2491